

광주지방법원 2023. 9. 20 선고 2023가단531433 판결 [보증채무금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B

피 고 C

변 론 종 결 2023. 8. 23.

판 결 선 고 2023. 9. 20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135,121,566원과 그 중 132,911,191원에 대하여 2023. 5. 18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9.3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(다만, '채권자'는 '원고', '채무자'는 '피고'로 한다).

2.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 제3항(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형식적
이의신청서만을 제출하였을 뿐, 구체적 내용이 담긴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,
적법한 송달을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,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모두 자백한
것으로 본다)

판사 이호산

청 구 원 인

1. 당사자 관계

채권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득하여 할부금융대출, 일반대출 등을 취급하는 여신전문금융업인이고, 선정 회 D 이하 “주채무자”라 합니다)는 채권자와 여신거래계약을 체결한 주채무자이고, 채무자 C 은 이에 대한 연대보증인입니다.

2. 여신거래계약의 체결

- 1) 채권자는 주채무자와 2021.06.30.에 원금 167,300,000원, 대출기간 63 개월, 대출이율 연 6.3% 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여 여신거래계약 및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을 준수하여 관련 채무를 이행하기로 하였습니다.

[대출번호] E

- 2) 만약 주채무자에게 여신거래기본약관 등 상에 기한이익상실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잔존원금 및 관련된 모든 채무에 대하여 연 8.5 % 을 적용한 지연배상금을 합산하여 일시에 상환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.

- 3) 이에 대하여 채무자는 상기 대출약정을 이해하고, 대출채무 및 모든 관련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.

- 4) 주채무자는 위 대출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나 여신거리기본약관 제8조에 해당하는 소정의 사유발생으로 인하여 채권자는 주채무자 및 채무자에게 기한이익상실에 관한 최고를 하였고, 이에 2023. 04. 14.자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습니다.

3. 청구금액내역(2023.05.17.기준)

잔존원금(A)	132,911,191 원
미납이자(B)	2,178,508 원
지연배상금(C)	31,867 원
미납수수료(D)	0 원
청구금액합계(A+B+C+D)	135,121,566 원

4. 맺음말

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금 135,121,566 원 및 그 중 132,911,191 원 에 대하여 2023. 05. 17.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9.3 % 의 비율에 의한 지연배상금과 독촉 절차비용을 지급받으자 이 사건 신청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.

